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개수 명확화 및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추가 등 사설안내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차지점에 설치되는 사설안내표지의 개수 명확화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삭제

다. 안내 요구가 많은 주요 시설을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에 추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소공인 집적지구,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자연장지 및 법인 등 자연장지 추가

라. 주택법 외 다른 법에 의한 공동주택 설치 대상에 추가

마. 용어 통일(제8조,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비도시지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진입로(사도 등)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를 “진입로 교차점에 주행방향 구분없이 시설별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비도시지역”으로, “지점의 양측 도로변에 각”을 “지점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비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6조 중 “2025년 10월 20일”을 “2026년 10월 2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의 시행전에 이미 설치 허가된 사설안내표지는 이 규정에 의한 사설안내표지로 본다.

제3조 도로관리청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시에는 본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 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제3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산업·교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공항시설법에 의한 공항 -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및 연안항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역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대형승합차 10대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소공인집적지구
관광·휴양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 관광진흥법 제70조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관광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공공·공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및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구분	시설의 종류
	<p>유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와 제16조제1항제3호의 자연장지 -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의 국립묘지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서 당해시설물이 500㎡이상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 등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① (생략)</p> <p>②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u>진입로(사도 등)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u>는 <u>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u>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왕복 4차로 이상인 <u>도시지역 외의 지역</u>의 도로에서는 교차점 전방 200~250m <u>지점의 양측 도로변에</u> 각 1개소의 진입로 예고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도시지역 외의 지역</u>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명소 또는 관광시설로부터 반경 10km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로와 동급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u>주행방향별로</u>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최대 5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p> <p>④ (생략)</p>	<p>제8조(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진입로 교차점에</u> <u>주행방향 구분없이 시설</u> <u>별로</u> ----- ----- -. ----- <u>비</u> <u>도시지역</u>----- ----- <u>지점에</u> ----- ----- -----.</p> <p>③----- <u>비도시지역</u>----- ----- ----- ----- ----- -----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u>2025년 10월 20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p>	<p>제16조(유효기간) ----- ----- ----- ----- <u>2026년 10월 20일</u>----- -----</p>
---	---